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8. 19 선고 2015나56474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피고, 항소인 D

변론 종결 2016. 7. 22.

판결 선고 2016. 8. 19.

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9. 선고 2014가단5321755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(이하 'B'이라고만 한다)과 피고사이에 2013. 12. 1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36,500,000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 위

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보전채권의 발생

가. 제1심 공동피고 B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부분(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하단 제4행까지)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나.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

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3. 12. 11. 피고와 채권최고액 6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2013. 12. 11.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(갑7호증).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,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출 및 신용보증이 이루어져 있었고, B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, 이미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. 또한 그 무렵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4. 5. 16.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, B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. 실제로 원고가 2014. 8. 18. 및 2014. 9. 17.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. 따라서 원고의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. B의 처분행위로 인한 무자력 초래 여부에 대한 판단

가. 연속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에 사해성 판단기준

1)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. 12. 11. 피고와 채권최고액 6,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(이하 '이 사건 처분행위'라고 한다), 그 후 2013. 12. 30. E에게 채권최고액 6,610만 원인 2013. 12. 19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(이하 'E에 대한 처분행위'라고 한다).

2)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B에게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,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와 그 후에 한 E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개의 처분행위로 보아 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,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와 E에 대한 처분행위는 별개의 처분행위이므로 각 처분행위마다 별개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3) 살피건대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,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,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,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다69026 판결, 2002. 9. 24.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갑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B이 시차를 달리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행위와 E에 대한 처분행위는 각 상대방들이 서로 다른 점, 또한 피고와 E은 채무자인 B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, 피고와 E은 상호 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, 채무자B의 피고 및 E에 대한 각 처분행위 내지 처분기회가 서로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B의 이 사건 처분행위와 그 후에 행하여진 E에 대한 처분행위는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

한다고 보아야 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E에 대한 처분행위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.

나.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한 무자력의 초래 여부에 대한 판단

1) 갑 7 내지 12호증, 을라 1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.

B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적극재산으로는 약 3억 1,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.

한편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는, 원고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었던 이 사건 구상금채무 70,160,000원,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(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변경)에 대한 1번 근저당채무 원금146,479,528원, 주식회사 아이민파트너스에 대한 2번 근저당채무 36,000,000원, 피고 D에 대한 수표할인금채무 20,000,000원(지급일이 2014. 1. 15.인 액면 500만 원의 수표2장 및 지급일이 2014. 3. 31.인 액면 500만 원의 수표 2장) 등 합계 272,639,528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2) 사정이 이와 같다면, B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B에게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없고,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 중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수, 판사 강동원, 판사 문현정

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208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: 건물의 번호 : 제9층 제902호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59.98㎡

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남시 분당구 대 42102.7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 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42102.7분의 50.00 분.